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57
----------	-------

발의연월일 : 2024. 1. 3.

발 의 자 : 이은주 · 장혜영 · 배진교
강은미 · 심상정 · 류호정
박홍근 · 김종민 · 강민정
박 정 · 이수진^(비) · 노웅래
박용진 · 김원이 · 양정숙
기동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지원 등”을 “지원, 전문 인력의 자격 등”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정책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